

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공시내용

소규모펀드(1월)공시: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

※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 제외

2. 공시 대상 펀드

(1) 1월 공시

| | 펀드명 | 발생일자 | 원본액 | 순자산총액 | 기준가격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(주식) 1호 | 2011-05-30 | 4,488,950,582 | 4,490,072,564 | 1,000.25 |

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